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관련 안내사항

<담당자 연락처>

(외화RP매입 제도 전반)

외환시장팀 김동준 조사역(02-759-5969), 김대석 과장(5960)

(증거금 관련)

외환회계팀 이하림 조사역(02-759-5846), 강신영 차장(5815)

※ 증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붙임파일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증거금 관리 방법 안내” 파일 참조**

I 사전 조치사항

(구비서류 제출)

- **향후 입찰 진행시** 참가 희망기관은 ①기본약정서, ②거래 원선정통지서(인감증명서 포함), ③외화채권결제계좌통지서 등의 서류*를 외환시장팀 앞으로 제출**

* (별첨) 입찰 참가 관련 필요서류 양식 참조(담당자 외환시장팀)

** 이메일(fxmarket@bok.or.kr, kdj777@bok.or.kr, polariskim@bok.or.kr : 수신자에 3개의 주소 모두 포함)을 통해 입찰 전까지 사본 송부, 원본(2부)은 등기우편을 통해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앞 송부

※ 낙찰 받은 기관은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내역 확인서, 낙찰금액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서 등을 외환시장팀 앞으로 입찰당일 14시까지 송부

(한은금융망 '국제금융'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권한 확보)

□ 향후 입찰 진행시 추후 안내 예정

II 증거금 관리

(낙찰자 증거금 관리)

□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에 따른 거래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의 평가차손 발생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화증거금을 징구

- **매주 화요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한국은행에 평가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 낙찰기관의 증거금 납입규모를 산정

※ 한국은행의 평가차손

= 기준증거금* - 환매조건부매입 외화채권 시장가격 평가액**

* 기준증거금 = $\sum(\text{당초 환매일까지 보유시 환매가} \times \text{증거금률}(105\%))$

** 전영업일 미국 동부 오후 4시 기준 블룸버그 가격(BVAL, Bid가격)

- '평가차손 > 0'인 경우 한국은행의 평가차손 원화환산액과 낙찰기관이 기납입한 증거금의 시장가격 평가액을 비교

※ 한국은행의 평가차손 원화환산액

= 한국은행의 평가차손 × 가치평가일의 미달러화 매매기준율*

* 서울외국환중개사가 고시하는 환율

○ '평가차손 원화환산액 > 기납입 증거금 시장가격평가액'인 경우 동 차액 이상을 증거금으로 추가 납입**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증거금증권의 시장가격. 다만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에 예치한 당좌예금 이외의 경우 시가평가액의 97%를 증거금으로 인정

** 다만, 동 차액이 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의 2% 이내일 때는 증거금 추가 납입을 면제

○ '평가차손 원화환산액 ≤ 기납입 증거금 시장가격평가액'인 경우* 낙찰기관의 증거금 납입 불필요

* 낙찰기관이 요청시 최대 동 차액까지 기납입 증거금 인출 가능 (외화채권 반환은 불가)

○ '평가차손 ≤ 0'인 경우* 낙찰기관의 증거금 납입 불필요

* 기납입 증거금이 있는 낙찰기관이 요청시 최대 기납입 증거금까지 인출 가능(외화채권 반환은 불가)

○ 낙찰기관은 매주 가치평가일 익일(휴일의 경우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추가 증거금을 설정

□ 증거금은 낙찰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설정

○ 한국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에서 관리

□ 한국은행은 가치평가일 익일 낙찰기관이 납입한 증거금증권의 가치 및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질권 설정 신청을 승인(담당자 외환회계팀)

(별첨)

입찰 참가 관련 필요서류 양식

- ☆☆1. <별지 제1호 서식> 거래원 선정 통지서
 - ☆☆2. <별지 제2호의2 서식> 외화채권 결제계좌 통지서
 - 3. <별지 제3호 서식> 거래원 변경 통지서
 - 4. <별지 제4호의2 서식> 외화채권 결제계좌 변경 통지서
 - 5. <별지 제6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 입찰서
 - 6. <별지 제8호 서식>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 입찰봉투
 - 7. <별지 제9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낙찰 명세표
 - ☆☆8. <별지 제14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외화채권매입 거래 기본약정
 - ☆☆9. <별지 제15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내역 확인서
 - ☆☆10. 낙찰금액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서
- ※ 파란색(별표☆☆)으로 표시한 1. <별지 제1호 서식> 거래원 선정 통지서, 2. <별지 제2호의2 서식> 외화채권 결제계좌 통지서, 8. <별지 제14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외화채권매입 거래 기본약정은 입찰전까지 외환시장팀 앞 송부(사본 이메일(fxmarket@bok.or.kr, kdj777@bok.or.kr, polariskim@bok.or.kr : 수신자 3주소 모두 포함시킬 것) 송부, 원본은 등기 우편 송부)
- ※ 초록색(별표☆)으로 표시한 9. <별지 제15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내역 확인서, 10. 낙찰금액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서는 낙찰 후 외환시장팀 앞 송부(낙찰 당일 14:00까지 송부)
- ※ 기타 검정색 서식은 필요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거래원 선정 통지서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통화스왑,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를 행할 우리기관 거래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성 명: 직 책: 인 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e-mail)	성 명: 직 책: 인 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e-mail)
성 명: 직 책: 인 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e-mail)	성 명: 직 책: 인 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e-mail)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 거래원은 복수로 선정

** 인감증명서 제출

<별지 제2호의2 서식>

외화채권 결제계좌 통지서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과의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를 위하여 우리기관의 외화채권 결제기관명 및 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결제기관 영문명 (SWIFT BIC) :

2. 계좌번호 (Safe Account Number) :

3. 2.에 연동된 Cash Account Number(2와 동일한 경우 생략) :

4. 낙찰기관 영문명 :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거래원 변경 통지서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통화스왑,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를 행할 우리기관 거래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성 명		(전화번호) (팩스) (e-mail)
직 책		
인 감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 인감증명서 제출

<별지 제4호의2 서식>

외화채권 결제계좌 변경 통지서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과의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를 위한 우리기관의 외화채권 결제기관명 및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결제기관 영문명 (SWIFT BIC)		
계좌번호 (Safe Account Number)		
계좌번호 (Cash Account Number)		
낙찰기관 영문명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 입찰봉투

접수번호 :

년 월 일

외화대출

외환스왑

한국은행

거래 입찰봉투

통화스왑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입찰자 주소 :

기 관 명 :

성명(거래원) :

(인)

<별지 제9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낙찰 명세표
 (년 월 일)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인)

■ 응찰금액 백만달러

■ 낙찰금액 백만달러

■ 평균낙찰금리 : (%, 전)

■ 최저낙찰금리 : (%)

■ 담보환율 : 원
 (스왑거래의 경우 최초교환환율)

입회자 : 감사실 검사역 (인)

입찰번호	입찰기관	응찰가격 ¹⁾	응찰금액 (백만달러)	낙찰가격 ¹⁾	낙찰금액 (백만달러)	비 고

주 : 1) 응찰가격은 외화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연, %), 외환스왑의 경우 스왑포인트(전), 통화스왑의 경우 통화스왑금리(연, %),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의 경우 매매이자율(연, %)임

<별지 제14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 기본약정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인
○○○○ 대표자 ○○○인

제1조(약정서의 적용) ① 이 약정서는 한국은행(이하 “매입인”이라 한다)이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약정서가 적용되는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에서 매입인과 매도인은 개별 거래에 관하여 거래내역 확인서에서 이 약정서와 다른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내역 확인서가 이 약정서에 우선한다.

③ 거래내역 확인서 양식은 매입인의 「경쟁입찰방식 외화유동성 공급 절차」 <별지 제15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내역 확인서」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의 이행) 매도인은 매입인과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1. 매입인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
2.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인이 비밀유지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금지
3. 가격 또는 금액 조작 등의 담합행위 금지
4. 매입인의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 및 시장정보의 제공
5. 코레스은행 결제담당직원의 비상연락망 제공
6. 매입인이 요청하는 낙찰금액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서를 제출. 다만, 매입인은 이 계획서를 입찰실시 여부 및 입찰금액 결정 용도로만 이용하며, 매도인이 2회 연속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7. 입찰대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매입인의 설명요구에 응하여야 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이란 매입인이 매도인에게 외화채권을 매입일에 매입가로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리 약정한 환매일에 매입인이 매도인에게 그 외화채권과 등가인 외화채권을 일정가액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2. “매입채권”이란 매입일에 매도인이 매입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채권을 말한다.
3. “등가매입채권”이란 매입채권과 등가인 채권을 말한다. 이 약정서에서 채권이 다른 채권과 서로 “등가”인 관계란 두 채권의 발행자, 발행통화, 종류, 종목, 액면가 및 수량이 동일한 상태를 말한다.
4. “증거금유가증권”이란 제6조에 따라 매입채권의 가치평가 후 매입인의 평가차손 변동에 따라 매입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대상은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으로 한정하되 만기일 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매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입인의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도 담보 대상증권으로 할 수 있다.
5.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이란 증거금유가증권과 등가인 유가증권을 말한다.
6. “현금증거금”이란 제6조에 따라 매입채권의 가치평가 후 매입인의 평가차손 변동에 따라 매입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현금으로 매도인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당좌예금을 말한다.
7. “증거금”이란 증거금유가증권과 현금증거금 모두를 말한다.
8. “수익”이란 매입채권 또는 증거금유가증권의 발행자가 해당 유가증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또는 해당 유가증권에 기초한 모든 현금의 분배를 말한다.
9. “매입일”이란 매입인이 매도인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입인에게 매입채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10. “매입가”란 매입일에 교부되는 매입채권에 대한 대가로 매입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말한다.
11. “환매일”이란 매도인이 매입인에게 등가매입채권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12. “환매가”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말한다.

환매가 = 매입가 + 환매차액

환매차액 = 매입가 × 매매이자율 × 보유일수/360

위 산식에서 매매이자율은 매입인이 경쟁입찰로 정한 이자율을 말하며 보유일수에 매입일은 산입하고 환매일은 불산입한다.

13. 중도환매시 환매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말한다.

중도환매가 = 매입가 + (처음환매가 - 매입가)

× 매입일로부터 중도환매일까지의 경과일수

매입일로부터 처음환매일까지의 일수

위 산식에서 경과일수에 매입일은 산입하고 환매일은 불산입한다.

14. “증거금률”이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계약 체결일의 매입채권의 시장가격을 매입가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로 105%로 한다.

15. “기준증거금”이란 만기보유시 환매가에 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6. “매입채권의 시장가격”은 블룸버그사에서 제공하는 전(前) 영업일 오후 4시(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Bloomberg Valuation(BVAL)의 Bid가격을 사용한다. “증거금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복수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평가일 직전 영업일의 가격을 단순평균하여 산출한 평가일의 해당 등가유가증권 가격을 말한다. 다만, 매입인과 매도인이 합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매매 관련 유가증권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7. “평가차손”이란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가치평가일의 기준증거금과 등가매입채권의 시장가격 간 차이에 따른 매입인의 손실을 말하며 기준증거금이 등가매입채권의 시장가격보다 클 때 매입인의 평가차손이 발생한다.

제4조(거래의 성립) ① 매입인과 매도인 간의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은 매입인이 낙찰결과를 매도인에게 통보한 때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거래 성립 후 매도인은 매입인에게 거래 내역 확인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가 성립한 경우 매입일에 매도인은 매입인에게 매입채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입인은 매도인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거래의 종료) ① 환매일에 매입인은 매도인에게 등가매입채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은 매입인에게 환매가를 지급하며, 이러한 교부 및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해당 거래는 종료한다.

② 환매일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매입인 또는 매도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거래를 종료(이하 “합의중도환매”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종료를 합의한 날의 2영업일 후를 환매일로 한다.

③ 환매일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입인은 매도인에 통지함으로써 거래를 종료(이하 “통지중도환매”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한 날의 2영업일 후를 환매일로 한다.

제6조(가치평가) ①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는 매주 화요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에 실시한다.

②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의 가치평가를 위한 적용환율은 가치평가일의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인과 매도인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증거금의 유지) ① 매도인은 매입인에게 평가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차손의 원화환산액과 증거금 평가액의 차액 상당을 추가 증거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인에게 발생한 평가차손의 원화환산액과 증거금 시장가격의 차액이 기준증거금 원화환산액의 2% 이내일 경우에는 증거금의 추가 제공을 면제한다.

② 증거금이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에 예치한 당좌예금일 경우 시가평가액 전액을 인정하며 그밖의 증거금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시가평가액의 97%를 인정한다.

③ 매도인에게 평가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입인의 증거금은 면제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의 제공은 가치평가일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 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매입인과 매도인이 합의할 경우 증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증거금 평가액이 평가차손의 원화환산액을 상회할 경우 매입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기납입증거금의 한도 내에서 차액 상당액의 증거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환매시에는 환매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거금을 반환한다.

⑥ 매도인이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입인은 최초 도래하는 입찰시 매도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⑦ 매도인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입인에게 교부한 증거금유가증권에 대하여 매입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에서 담보물을 관리한다.

제8조(수익의 반환) 매입인은 환매기간 중에 매입채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채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수익 상당액”이라 한다)을 그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의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과 교부) ① 이 약정서와 관련하여 교부 또는 지급되어야 할 유가증권과 현금에 관한 모든 권리, 명의, 이익은 그 교부 또는 지급시에 이를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약정서와 관련하여 교부되는 유가증권은 담보설정 및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유가증권의 교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납부한 증거금유가증권을 매입인의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대상증권 중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입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때 매도인이 매입인에게 교환하여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기존 증거금유가증권의 시장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1. 증거금유가증권의 발행인(보증사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다.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2. 그 밖에 증거금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통지중도환매에 따른 환매일의 조기도래) ①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매입인은 매도인에게 거래를 즉시 종료한

다는 뜻의 통지(이하 “환매통지”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제7조에 따른 증거금 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매도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매도인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절차, 회생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매도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기로 약정하거나 채권자와 채무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그 밖에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매도인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매도인이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 및 증권 규제법령에 따라 매도인의 자산이나 매도인이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6. 그 밖에 매도인이 매입인의 「경쟁입찰방식 외화유동성 공급 절차」 등 관련 규정과 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입인과 매도인은 즉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시기 및 방법) ① 합의중도환매와 통지중도환매의 경우 중도환매가는 제3조제13호에 따라 산정되며 정산시기 및 방법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환매불이행에 따른 거래의 종료 확정시 매입인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하여 매도인의 모든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을 즉시 교부받는다.

③ 환매불이행에 따른 거래의 종료 확정시 정산금은 매입인의 매입채권 및 증거금유가증권의 실제매각액, 현금증거금과 환매가 등을 상호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할 잔액이 남은 매입인 또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13조(입찰보증금) ① 매도인은 응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매입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입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다만, 매도인이 매입일에 매입채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납부를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입인은 매도인의 매입채권 교부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손해배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① 매도인이 매입일에 매입채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인은 낙찰을 무효화함과 동시에 매도인의 입찰참가자격을 향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환매일에 환매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인은 지연 경과일수만큼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최초 도래하는 입찰시 매도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지연이자) 이 약정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되어야 할 날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외화: 해당 기간 중 매입인의 주거래은행의 결제지연이자(Overdraft)와 시장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입인이 결정한 금리
2. 원화: 해당 기간 중 거래금액 가중평균 무담보익일물 콜중개금리에 25bp를 가산한 금리

제16조(사무처리 기관) 매입인과 매도인을 대신하여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증거금유가증권의 관리 및 대체, 결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거래 종료 등 증거금유가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7조(수수료지급) 제16조에 따른 사무처리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입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한다.

제18조(소송) 이 약정과 관련된 소송은 매입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각 조항의 효력 및 적용의 우선순위) ①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매입인의 「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 및 「경쟁입찰방식 외화유동성 공급 절차」를 적용한다.

② 이 약정서 및 매매거래확인서의 각 조문은 다른 조문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실행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 관련 법령, 국내외 금융시장 관행에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① 매도인은 이 약정의 계산대리인으로서 환매일 및 환매일 이전에 지급할 금액, 일자 및 계산내역을 매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약정의 체결) 매입인과 매도인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내역 확인서

수 신 :
 발 신 :
 일 자 :
 제 목 :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이 거래내역 확인서는 한국은행과 간에 체결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의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년 월 일 체결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거래 기본약정」의 일부를 이루며, 이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른 사항 외의 모든 거래조건은 동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매 입 자 : 한국은행
- 2. 매도자의 결제정보
 - 보관(결제)기관 :
 - 결제계좌(채권계좌) :

/ Cash계좌* :)
*채권계좌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

3. 매입유가증권 내역

	① 체결일	② 매입일	③ 환매일	④ 매도자	⑤ ISIN	⑥ 액면 금액 ²⁾	⑦ 통화	⑧ 매입 단가 ¹⁾	⑨ 매입 금액 ²⁾	⑩ 환매단가 ¹⁾	⑪ 환매 금액 ²⁾	⑫ 회차 정보	⑬ 만기	⑭ 매매 이자율(%)	⑮ 시가 ³⁾	⑯ 매입가 ⁴⁾	⑰ 환매가 ⁴⁾	⑱ 시가액 ²⁾	㉑ 증거금률 ²⁾
작성 요령:	YYYYMMDD 20200629			영문명	US293992818212		USD	⑤/⑧×100	⑥×⑧/100	⑧×(1+매매이자율×(⑬/360))	⑥×⑩/100	1	84	1.1234 (낙찰금리)	BVAL 가격	10,000,000	10,258,535.89	⑥×⑱/100	C/⑱×100
1																			
2																			
3																			
합계								A ⁵⁾			B ⁵⁾							C	

- 주 : 1) ⑧, ⑩은 소수점 10위미만 반올림: 예) 100.1234567890
- 2) ⑥, ⑨, ⑪, ⑱, ㉑은 소수 2위미만 반올림: 예) 5,001,400.23
- 3) 전영업일 미국 동부 오후 4시 기준 Bid가격, Bloomberg Valuation(BVAL), clean PX
- 4) ⑯매입가=낙찰금액=약정대금, ⑰환매가(소수 2위미만 반올림)=매입가×(1+매매이자율×(만기 보유일수/360))
- 5) 마지막 채권의 ⑧매입단가 및 ⑩환매단가를 조정하여 '⑨매입금액의 합계(A)와 ⑯매입가' 및 '⑪환매금액의 합계(B)와 ⑰환매가'를 일치시킬 것

법인명 : 작성자 : (연락처 :)

낙찰금액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서

한국은행 국제국장 앞

기관명
거래원 (인)

낙찰일 : . . .

낙찰규모 : (억달러)

자금운용계획

거래상대방 ¹⁾	운용내역 ²⁾	운용규모 (억달러)	비고 ³⁾
합계			

- 주 : 1) 은행, 비은행, 기업, 개인 등
2) 외채상환, 외화대출, 스왑만기, 스왑공급, 마진콜, 기타 등
3) 운용관련 세부내용 작성